

#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97
----------	------

2021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28일, 김용연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6월 2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3차 교육위원회(2021. 6. 18.) 상정·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용연 의원)

### 1.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아.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 협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차.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 추진 및 녹색제품 관련 정보 공유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등의 업무평가 반영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의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 2. 주요내용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김용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97호로 발의되어 2021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오늘날 세계는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의 가속화, 그리고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및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규제하고자 유엔기후변화협약<sup>1)</sup>을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 지양과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탄소중립(저탄소 실현) 및 지속가능한 녹색 생산·소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녹색제품 구매촉

---

1)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85개국의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이 참여해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했고,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기본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기로 하는 ‘교토기후협약’을 하였음. 이후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지구 평균기온상승을 2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2020년부터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하였음.

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sup>2)</sup>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처럼 관련법과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등을 환경부에 매년 보고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 정책은 대부분 자체 계획이 아닌 정부의 기본계획과 법에 따른 조치사항이 대부분인바, 자체적으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1]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구매 실적**

(기준: 2020.9.29.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구매	녹색구매	구매율(B)
국가기관	746,369	420,490	56.34
지 자 체	3,678,690	1,520,459	41.33
교육청	1,647,920	1,086,889	65.96
<b>서울특별시교육청</b>	<b>51,884</b>	<b>33,887</b>	<b>65.31</b>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계획,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등 서울시교육청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그 취지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계획기간:2021~2025’, 환경부

[표-2]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구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9개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미제정 (8개 교육청)
기관명	경기,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충북, 제주, 강원, 전남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적용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계획과 이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구매실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8조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녹색제품의 구매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과 정보제공, 그리고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13조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 평가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sup>3)</sup>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적용대상기관에 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기관을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와 법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기관에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은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공립학교에 준할 정도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0-0451)<sup>4)</sup>, 법 제2조제2호<sup>5)</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구매촉진계획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의견(안 제5조~안 제6조)

3)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6.

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51,(2011.02.17.)

'~(중략)~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자의 특별한 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건학정신에 따라 사학을 설립·운영할 자유는 물론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9 판결례).~(이하 생략)'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안 제5조제1항은 법 제3조제1항6)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은 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6조제1항은 법 제8조제1항7)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2항은 구매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녹색제품에 관한 구매촉진 및 구매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은 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동시에 이에 포함되어야 할 구매계획과 제도 개선 및 교육과 홍보 등에 대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녹색제품 구매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구매의무에 관한 의견(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6조8)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제품이 녹색제품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북 또는 매뉴얼 등의 제작을 통해 녹색제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6)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7)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8)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녹색구매지원센터에 관한 의견(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연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증진 사업 추진과(안 제1항) 정보공유(안 제2항), 교육(안 제3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sup>9)</sup>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아직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다만 서울시는 현재 센터의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선정<sup>10)</sup>하는 실제적인 과정에 있는바, 향후 센터가 설립·운영될 경우 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센터 설립 및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센터의 이용에 관하여 상호협력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센터의 활용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9)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10)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455호.(2021.5.17.)

가. 사업명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나. 사업기간 : 2021.7.1 ~ 2023.2.28.(1년 8개월)

다. 위탁금액 : 200백만원

라. 접수기간 : '21.6. 7(월), 09:00~18:00

마.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일시 : '21. 6. 15(화) 14:00 예정



- 이 외에 교육(안 제9조), 구매 문화 증진(안 제10조), 정보제공(안 제11조),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안 제11조), 평가 및 보상(안 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사안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588, 2021.6.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에 한정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이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교육감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